

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02.12. 2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비창업자들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, 기술 및 경영지원, 자금연계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며 창업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,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창업보육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설지원
 - 가. 인터넷서비스 제공
 - 나. 시험분석 및 측정장비 지원
 - 다. 자료 및 공동기자재실, 사무기기 등의 공동활용
 - 라. 기타 및 사무관리 지원
2. 기술지원
 - 가. 애로기술 지도 및 상담
 - 나. 첨단기술, 정보인프라 지원
 - 다. 대학연구소와 연계 지원
 - 라. 전담교수 및 연구인력 알선
 - 마. 특허관련 기술지원
3. 경영지원
 - 가. 세무, 회계, 마케팅지도 및 연수
 - 나. 입주업체 대외 홍보 지원
 - 다. 구조조정자금 및 창업자금 연계 지원
 - 라.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담보보증 추천
4. 대학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
5.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산하에 필요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1.6>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4.>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보육매니저) ① 입주기업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에 전문

보육매니저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② 보육매니저는 보육매니저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, 중소·벤처의 창업과 경영 스킬보유자 또는 유경험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1.6., 2015.3.4.>

③ 보육매니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주기업의 창업과 사업화 지원
2. 입주기업의 각종 요구사항 지원 및 졸업기업의 사후관리
3. 제반 인프라(자금, 기술, 장비 등)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기관과 입주기업 연결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4.8., 2015.3.4.>

② 위원회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4.8., 2015.3.4.>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의2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은 본교 교직원과 외부 전문인사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15.3.4.]

제6조의3(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15.3.4.]

제7조(입주부담금) ① 센터 입주가 결정된 입주기업은 입주일까지 센터에서 결정한 입주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입주기업은 매월 센터에서 결정한 입주부담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입주기업은 기타 시설관리비가 발생할 경우, 해당 금액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입주기업이 퇴거할 경우, 센터는 입주보증금을 퇴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주부담금 및 기타 시설관리비가 완납된 입주기업에 한하여 입주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12.20.]

제8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중소기업청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본교자체 지원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주식발행시 상장주식 중 5% 범위이내에서 주식 액면가 매입 우선권을 가지며(다만, 졸업 후 5년으로 한다) 연매출액 대비

일정액을 창업보육센터 발전기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③ 센터에 입주한 업체와 대학소속 교수진과의 교내 및 외부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용역 간접경비로 5%를 창업보육센터 연구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9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